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선수선발규정

제정 1996. 4. 2.
개정 2011. 7.18.
개정 2011. 9.19.
개정 2013. 5.22.
개정 2013. 8.20.
개정 2013. 9.13.
개정 2013.11.26.
개정 2015. 3.20.
개정 2016. 4. 1.
개정 2017. 3.23.
개정 2018. 3.15.
개정 2019. 4. 1.
개정 2019.12.12.
개정 2020. 7. 7.
개정 2021.10. 1.
개정 2022. 7.28.
개정 2023. 6.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제1항제7조에 따라 우수한 골프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선발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국가대표는 국가대표 선수를 말한다.

② 국가대표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의2호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골프협회(이하 “협회” 또는 “KGA” 라 한다)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③ 국가상비군은 주니어국가상비군을 포함한 국가상비군 선수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국가대표 선수에는 “협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협회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주니어국가상비군)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선발자격) ①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수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수는 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2 특별선발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을 선발하여야 할 경우 선수로 등록

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협회의 소속 선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절차) ①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의 결정과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수의 선발 결과를 심의한 후 후보자를 확정한다.

② 선수를 선발하고자 할 때는 선발전 개시일 2개월 전에 선발 일정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국가대표 선발전 경기조건 등 공지가 늦어지는 경우 공고 지연의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고 선발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선수 선발 즉시 위원회가 확정된 후보명단 등 선발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최종명단 발표 이후 3월 1일 이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26.>

제6조(선발구분) 국가대표, 국가상비군 그리고 주니어국가상비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초등부 제외)
2. 주니어국가상비군(5~6학년 초등부)

제6조의 2(특별선발) 주요 국제대회에 파견하는 선수선발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회장의 승인으로 특별 선발할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협회(시도협회 포함) 및 산하 연맹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6.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승부조작, 국가대표 강화훈련 및 선수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외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12. 스포츠공정위원회(연맹체 및 시도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포함)에 회부되어 징계 심의 중인 사람은 해당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위원회 결의로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선발시기) 선수선발은 당해연도 10월~11월 중에 제11조(선발방법)에 의거 선발한다.

제9조(선발인원) 선발인원은 다음의 정수로 한다.

구 분	국가대표	국가상비군 <개정 2022. 7.28.>	주니어국가상비군
남 자	6명	10명 <개정 2022. 7.28.>	3명
여 자	6명	10명 <개정 2022. 7.28.>	3명
계	12명	20명 <개정 2022. 7.28.>	6명

제10조(선발대회와 배점) ① 선발대회는 협회 주최·주관대회 및 연맹(초등,중고,대학) 또는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협회 승인대회를 기준으로 하며, 대회 선정과 폐지, 배점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2. 7.28.>

② 선발대회 및 등급은 매년 초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발표하며, 순위별 배점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2. 7.28., 2023. 6.23.>

③ 상기 제2항의 선발대회 중 연맹 또는 시도협회 주최·주관 대회가 당 협회(대한골프협회) 주관대회 일자(본경기)와 중복되는 경우 선발대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협회 주관대회 일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되어 연맹 또는 시·도협회 대회일자와 중복되거나, 부별(남자부, 여자부) 일정이 틀릴 경우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대회를 선발대회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7.28.>

④ 순위별 점수 분배 시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해당 순위의 점수를 합산하여 인원수만큼 나눈 뒤(소수점 1자리 반올림)동순위자에게 각각 부여한다. 단, 최저순위에 동순

위자가 있을 경우, 인원수에 상관없이 최저점수를 해당 선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개정 2023. 6.26.>

⑤ 국제경기대회(협회 파견사업)가 선발대회 일정과 중복될 경우, 선발대회로 포함하여 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2. 7.28., 개정 2023. 6.26.>

제11조(선발방법) ①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은 선발대회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아래 각 호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22. 7.28.>

1. 선발 포인트는 제10조제2항의 대회에서 획득한 상위 포인트 순으로 최대 6개를 산입한다. <신설 2022. 7.28.>
2. 선발 포인트 상위 6명은 국가대표, 차상위 10명은 국가상비군으로 선발한다. <신설 2022. 7.28.>
3. 선발 포인트가 동점일 경우, 대회에 참가한 횟수가 적은 선수가 우선한다. 선발 포인트와 대회에 참가한 횟수가 동일한 경우 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신설 2022. 7.28., 개정 2023. 6.26.>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KGA 주최·주관의 선발대회가 4개 이하로 개최될 경우 별도의 선발전을 통해 선발한다. <신설 2022. 7.28.>
5. 선발전 참가자는 선발 포인트 상위 순으로 하며, 참가인원 수 등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신설 2022. 7.28.>

② 주니어국가상비군은 선발대회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아래 각 호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22. 7.28.>

1. 선발 포인트는 제10조제2항의 대회에서 획득한 총 포인트 순으로 제9조의 정원에 따라 선발한다. <신설 2022. 7.28.>
2. 선발 포인트가 동점일 경우, 대회에 참가한 횟수가 적은 선수가 우선한다. 선발 포인트와 대회에 참가한 횟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를 선발한다. <신설 2022. 7.28.>

③ 삭제 <2022. 7.28.>

1. 삭제 <2022. 7.28.>

2. 삭제 <2022. 7.28.>

가. 삭제 <2022. 7.28.>

나. 삭제 <2022. 7.28.>

다. 삭제 <2022. 7.28.>

3. 삭제 <2022. 7.28.>
4. 삭제 <2022. 7.28.>
5. 삭제 <2022. 7.28.>
- ④ 삭제 <2022. 7.28.>
 1. 삭제 <2022. 7.28.>
 2. 삭제 <2022. 7.28.>
- ⑤ 삭제 <2022. 7.28.>
 1. 삭제 <2022. 7.28.>
 2. 삭제 <2022. 7.28.>
 3. 삭제 <2022. 7.28.>
 4. 삭제 <2022. 7.28.>

제12조(이의신청) ① 협회는 선발된 최종명단을 확정하기 전에 후보명단을 공개하여 1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가지며, 후보대상자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승낙 또는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후보명단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협회에 등록된 선수
2. 선발대회에 참가하여 포인트를 획득한 선수의 보호자, 지도자, 소속 팀의 장
<개정 2022. 7.28.>

제13조(임명과 활동기간) 회장 승인으로 최종 임명된 선수의 활동기간은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차기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선수의 활동기간 중 결원 또는 증원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에 따르며, 보결 선수의 활동기간은 전임 선수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선발기록자료 보존과 폐기) ①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과 관련한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시 확인 가능하도록 근거자료(선발결과 기록지,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는 협회에 5년간 보존하고, 보존기간 기산일은 처리·완료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② 회장은 다음의 각호에 따라 기록 보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정책 또는 사업 내용이 변경·조정되어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각종 감사, 수사 또는 소송과 관련되어 그 종료 시까지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폐기하여야 하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문서세단기 등으로 절단하거나 원형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완전 소각시킨다.

부 칙 <1996.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18.>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제143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1. 9.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제143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22.>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제147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3. 8.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제147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13.>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제148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3.11.26.>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제148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5. 3.20.>

제1조(경과조치)이 개정규정은 제151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6. 4. 1.>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7. 3.23.>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2018년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부터 적용)

부 칙 <2018. 3.15.>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2019년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부터 적용).

부 칙 <2019. 4. 1.>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2020년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부터 적용).

부 칙 <2019.1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61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2020.7.7.)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2021.10. 1.)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3년도 선수의 선발은 제2차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2022. 2.22.)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6. 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4년도 선수의 선발은 제10차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2022. 12.26.)부터 적용한다.

[별표] <개정 2022. 7.28.>

순위에 따른 배점표

순위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1	750	600	450	300	150
2	550	440	330	220	110
3	450	360	270	180	90
4	375	300	225	150	75
5	325	260	195	130	65
6	285	228	171	114	57
7	250	200	150	100	50
8	220	176	132	88	44
9	195	156	117	78	39
10	175	140	105	70	35
11	150	120	90	60	30
12	130	104	78	52	26
13	115	92	69	46	23
14	105	84	63	42	21
15	95	76	57	38	19
16	85	68	51	34	17
17	75	60	45	30	15
18	65	52	39	26	13
19	55	44	33	22	11
20	50	40	30	20	10
21	45	36	27	18	9
22	43	34	26	17	9
23	40	32	24	16	8
24	38	30	23	15	8
25	35	28	21	14	7
26	30	24	18	12	6
27	28	22	17	11	6
28	25	20	15	10	5
29	23	18	14	9	5
30	20	16	12	8	4
31	15	12	9	6	3
32	13	10	8	5	3
33	13	10	8	5	3
34	13	10	8	5	3
35	13	10	8	5	3
36	10	8	6	4	2
37	10	8	6	4	2
38	10	8	6	4	2
39	10	8	6	4	2
40	10	8	6	4	2
41	10	8	6	4	2
42	10	8	6	4	2
43	5	4	3	2	1
44	5	4	3	2	1
45	5	4	3	2	1
46	5	4	3	2	1
47	5	4	3	2	1
48	5	4	3	2	1
49	5	4	3	2	1
50	5	4	3	2	1
51	5				
52	5				
53	5				
54	5				
55	5				
56	5				
57	5				
58	5				
59	5				
60	5				